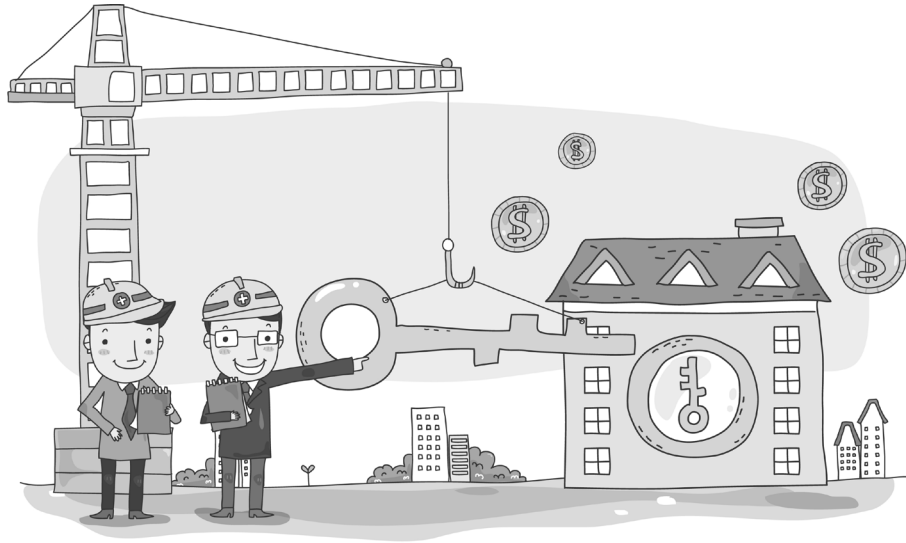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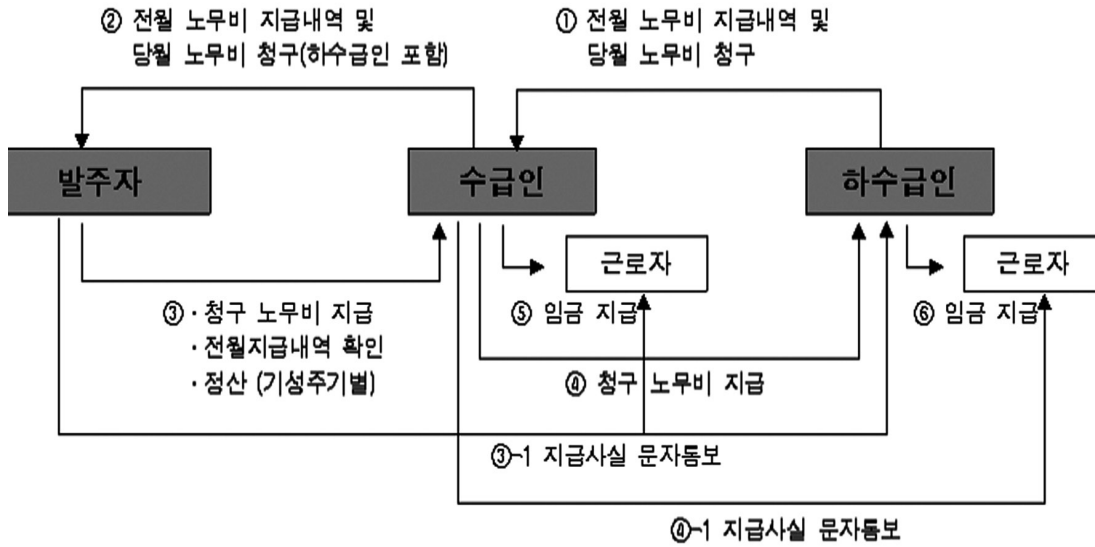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하며, 발주자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개념도〉

2. 도입취지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지급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사대금 지연지급 시 또는 타비용 우선 지출시 임금지급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6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하고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였다.

- 국토해양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지침』 발표('11.12월)
- 행정안전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시달('12. 5월)

3. 관련규정

- 1) 기획재정부 공사계약 회계예규(계약예규 2200.04-104-25, 2012. 1.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3,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1.1.〉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404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2.3.22.〉

4. 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1) 대상공사

- 국가계약공사 : 2012. 1. 1일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장기계속계약공사 포함)부터 적용
- 지방계약공사 : 2012. 4. 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

2) 지급범위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근로자 포함)

5. 업무처리 현황

순서	국가계약공사(국토해양부)	지방계약공사(행정안전부)
1	합의서, 통장사본 제출(원·하수급인) · 노무비전용통장 사본 제출(현장별 개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월별 노무비 지급계획서 제출	합의서, 통장사본 제출(원·하수급인) · 노무비전용통장 개설, 사본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2	노무비 청구(원·하수급인) ·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제출 · 전월 지급내역서, 지급증빙자료 제출 · 노무비 전용통장 전체 입출 기장내역 사본 (잔액확인)	노무비 청구(원·하수급인) ·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제출 · 전월 지급내역서, 지급증빙자료 제출
3	지급사실 통보(감리단) · 지급내역 및 청구서 검토 후 지급예정 문자를 근로자에게 발송	노무비 지급(발주기관) · 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4	노무비 지급(발주기관) · 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 지급	노무비 지급(수급인) · 노무비 입금일로 2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 · 노무비 입금일로 2일 이내 직접근로자에게 지급
5	노무비 지급(수급인) · 노무비 입금일로 2일 이내 직접근로자에게 지급 · 노무비 입금일로 2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	노무비 지급(하수급인) · 노무비 입금일로 2일 이내 직접근로자에게 지급
6	노무비 지급(하수급인) · 노무비 입금일로 2일 이내 직접근로자에게 지급	지급결과 보고(원·하수급인) ·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7	지급결과 보고(감리단) · 익월 5일까지 지급 결과 보고 · 미지급 내역 시정 요청 및 처리결과 보고	

6.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 서비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지급 확인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임금지급 확인서비스는 근로자의 입출금내역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임금 청구정보와 대조를 통해 정상·과소·지연·미지급 등의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자동 발송하며,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와 노무비 지급 결과보고서 등도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회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02-3449-1588)와 (주)한국경영원(1588-9869)이 있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업체 간 거래대금확인 및 투입·거래내역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았으며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와 근로자가 받은 노무비를 전자시스템으로 수집·비교해 일치 여부를 자동 관리할 수 있다

(주)한국경영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에 꼭 필요한 ‘원수급사 보고기능’과 ‘문자통보 기능’을 지원한다. 또 발주자에게도 노무비 기성청구 시 필요한 모든 정보(노무비 상세내역, 계좌내역 등)를 제공한다. ☎

2012년 정기 기사 2회 필기 - 건축설비기사 1교시 A형 정답

1	2	3	4	5	6	7	8	9	10
다	나	라	가	다	다	나	라	나	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	나	나	나	가	다	가	나	라	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		다	라	나	라	다	다	라	라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나	다	나	나	라	라	가	가	나	다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나	다	나	나	나	라	가	나	라	라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	나	가	가	다	라	나	가	라	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라		다	나	가	라	나	라	가	다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가	다	다	나	가	라	가	나	다	가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	나	가	라	라	나	다	나	라	다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가	나	나	다	가	라	다	가	나	라